						(앞면)
봉함엽서						
보내는사람	(요금후납)					
○○경찰서장						
주소						
(담당 ○○○,	5 –)				
	받는 사	람				
						귀하
접는선						
	위	반사실 통지 및 고	 태료부과 시	l전통지	서	
대상자 :						
주 소:	O로ᄍ코 7k이 코트	트버그로 이비의 지시이 하				
	귀하의 차량이 오른쪽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 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.					
1. 아래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되면 귀하에게 과태료가 부과						사진
됩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 한 위반 항목은 20% 감경되고 과태료 절차는 종료됩니다.						
2.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범칙금 절차로 전						이버다라라
환되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, 밝혀지지 않은 경 우에는 위반차량의 소유자(관리자)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						위반차량
다.	[당의 포뉴자(전다	사)에게 파네됴글 구파입니	위반일시			차량번호
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~						
위반 운전자 확인 범칙금 : 원 (벌점 : 점) 의바 유저지 미화이 과태료 : 원			위반장소			
위반 운전자 미	확인 까테뇨. ※ 사전님	원 납부기한 경과 시 원	위반내용			
3.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·지구대(파출소)를 방문하거나 인터넷(www.efine.go.kr)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.			적용법조			
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.			일련번호			
4. 보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경찰서장 (관인)						
			·			
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(납부자용) 과태료 사전수납의뢰서(수납은행동 사전수납의뢰서(수납은행동						₩ 0 \
소 관	세입징수관	관서계좌	•			
카테르그리비수	I		• <u>소</u> 관 관	항 목	세입징수관	관서계좌
과태료고지번호 납 부 자	<u> </u>	위반차량				
주 소		12.40	과태료고지번호	2		
71-1	14 81 01	21 71	납무자			
사전 기한		가지	주 소			
납부 금액	원		사전 기한	· 년	월 일까지	
납부가상계좌	 ※ 이용시 수수료기	· 발생할 수 있습니다.	납부 금액		원	
			회 계			
위 금액	을 납부하시기 바랍니 년 월 일	나.(영수압니나.) 일 ,⋯∵.				
은행(우체국)지점(국고		- 리점) 수납인 경찰서장 취급자인	위 금액을 =	수납 의뢰합	니다.	
····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			
※ 납부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본·지점(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 ■						
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. 은행(우체국) 지점 (수납인)						
※ 인터넷납부는 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하시거나, 금융결제원 (http://www.giro.or.kr)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납부기한 내)						
	<u>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</u> 기 지지 사람이 때문		■ HLINET HH?	u 코티크 cơ	W 2 F24 X1 O UII ¬1	지저나비기된 권기
		!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 위 경과 시 원'문구)는			ル%삼성 석푱백과	사신답구기안 성과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- 귀하의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영상단속 되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 통지합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(전자문서 포함) 또는 구술로 위반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과태료 감경 :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 - 1. 과태료의 20% 감경 : 20km/h 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(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별표 39)에만 적용되며,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앞면의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20% 감경된 금액이 표시됩니다.
 - 2. 과태료의 50% 감경: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나, 체납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하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아래 사유에 중복 해당되더라도 20%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- 나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
 - 다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-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 - 마. 미성년자(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,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이어야 함)
- 「도로교통법」 제9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접는선

- 앞면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과태료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가 상계좌로 입금하시거나 지로사이트(http://www.giro.or.kr), 금융기관,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 범칙금·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(http://www.efine.go.kr)에서도 위반내용 등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,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자르는 선